『위험물운반자』실무교육(선임자) 안내



(Ver 24,1)

		(voi = i, i,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			
=	구 분	주 요 내 용			
근거 법령		• 위험물안전관리법			
시행 근거		• 법 제28조(안전교육) • 시행규칙 제78조(안전교육)			
교육 안내	과정명	• 위험물운반자 실무(종사자) 교육			
	교육 대상	 위험물운반자란 -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[법 제20조(위험물의 운반)] 관련 근거: 법 제28조 제28조(안전교육) ① 안전관리자·탱크시험자·위험물운반자·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⇨ 시행규칙 제78조(안전교육) 			
	교육 주기	•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,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교육 관련 근거: 시행규칙 제78조제2항 및 관련 시행규칙 별표 24 제78조(안전교육) ②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·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. ⇨ 별표24(종사 후 6개월 이내, 3년마다 1회)			
	교육 과정	• 교육과정 등			
		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시간 교육 장소			
		집합과정 소집교육 4시간 시도지부 지정교육장			
		※ 근거 : 시행규칙 제78조제2항관련 별표 24			

실무(선임자) 교육 위험물운반자

• 교육안내문 수령 후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하여 교육수강 - 교육안내문 우편발송(교육 이수기한 해당분기의 1개월 전 발송) - 안전원 홈페이지에 실무교육신청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일시 신청(사전접수) 교육 흐름도 3 4 교육과정 및 일 선임대상처 확인 실무교육 만전원 교육장 정·장소 선택 화미(교육미년부 접수완료 (집합교육 이수) 교육 일정 • 안전원 홈페이지(www.kfsi.or.kr) 실무교육 일정참고 교육 참가시 • 집합교육 : 신분증, 자격수첩(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원 자격수첩) 구비 서류 ┃• 사이버교육 : 해당사항 없음 ※ 교육 전 종사자 자격취득 필수 • 위험물 관계 법규 • 위험물 운반 행정실무 교육 내용 • 비상대응 및 응급처치 • 질의회신 및 위험물 사고사례 • 30,000원 실무교육 ※ 근거 :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3조(안전교육의 수수료) 수수료 ★ 안전원 회원의 경우 실무교육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실무 교육 • 실무교육이수증은 교육이수 후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. 이수증 발급

실무(선임자) 교육 위험물운반자

교육 미 이수자 행정 처리

•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

□ 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

관련 근거 : 법 제28조제4항

제28조(안전교육)

④ 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• [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] 위험물 운반 차량의 주행 중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 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·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 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

• [1천만원 이하의 벌금]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없거나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을 수료 하지 아니한 자

벌칙 등 행정사항

- [500만원 이하 과태료]
 - 점검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자
 -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자

위반 행위	과태료 금액
• 1차 위반 시	50만원
• 2차 위반 시	100만원
• 3차 이상 위반 시	200만원

❖ 신용카드 결제

교육일자 선 택



교육신청자 정보확인



결제하기 (신용카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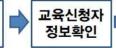
교육신청 완 료

❖ 무통장 계좌 입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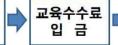
인터넷 실무교육 수수료

선 택

교육일자







교육신<mark>청</mark> 완 료

결제방법 안내

※ 주의사항

- 1. 입금기한 : 교육신청일로부터 3일(근무일 기준)후 오후 6시까지 (기한 내 미입금 시 교육 접수내역이 취소되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.)
- 2.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**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, 폰뱅킹을 사용하여 입금**하시기 바랍니다.
- 3.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.
- 4.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http://www.kfsi.or.kr접속>소방안전교육>실무교육>실무교육 신청 내역)
- 5. 신용(체크)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~3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•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및 금액

교육수수료 환불

- 환불기준
 환불금액

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
 전액

 과오납한 경우
 과오납 금액

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
 전액

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 전액

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
 없음
- 환불시 주의사항
- 1.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.
- 2. 교육 신청 후 불참 시, 교육 당일에는 교육신청·변경·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 (교육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)
- 근무시간 : 09:00 ~ 18:00
- 지부별 연락처

지부별 연락처

지부(지역)	연락처	지부(지역)	연락처
서울지부 (서울 영등포)	02-850-1378	경기지부 (수원 팔달구)	031-257-0131
서울동부지부 (서울 동대문)	02-850-1392	경기북부지부 (경기 파주시)	031-945-3118
부산지부 (부산 금정구)	051-553-8423	강원지부 (강원 횡성군)	033-345-2119
대구경북지부 (대구 중구)	053-431-2393	충북지부 (청주 흥덕구)	043-237-3119
인천지부 (인천 서구)	032-569-1971	전북지부 (전북 완주군)	063-212-8315
광주전남지부 (광주 광산구)	062-942-6679	경남지부 (경남 창원시)	055-237-2071
대전충남지부 (대전 대덕구)	042-638-4119	제주지부 (제주 제주시)	064-758-8047
울산지부 (울산 남구)	052-256-9011		